



## 독과점 및 재벌정책의 연속성과 보완방향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

공정위 중심의 행정규제주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보완의 방향을 요약하면, 독점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절차와 상관없이 원고로서 바로 법원에 제소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찰도 공익 대표자로서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에 대해 이를 바로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지만, 검찰과 법원내에서 시장분석 능력과 식견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라든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I 민주화와 개방적 경쟁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경쟁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의 제정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공정거래법이라는 명칭을 통해 소프트한 이미지를 주고 있지만, 이 법률은 처음부터 독점금지법 요체를 담고 있었고 그 때나 지금이나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대기업 내지 재벌들을 집행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아래 주무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의 위상을 넘어 중요한 권력기관의 하나로 자리매김 한 인상이 같다.

넓게 보아 경쟁정책은 고용정책이나 조세정책, 과학 및 기술정책, 통상정책 등 다양한 산업정책들 중의 하나이다. 물론 경쟁정책 혹은 경쟁법의 다른 산업정책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는 견해도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실정법 체계나 경제의 실제면에서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경쟁법은 헌법이 선언하는 사시장체의 존속과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소위 경제헌법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정치의 민주화는 필연적으로 경제의 민주화를 통해 그 실질이 보장되는 것이다. 경제의 민주화는 행정규제의 완화와 독점규제정책의 강화로 집약될 수 있으며, 독점금지정책은 독점력 혹은 독점기업에 대한 견제와 균형추로 작동하여 시장의 개방성과 활력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독점세력들은 대체로 정치권력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개방적 경쟁체제는 흔히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습 내지 변형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사시장을 배경으로 한 기업의 법적 환경은 크게 기업 그 자체의 조직에 관한 것, 수요자(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거래관계, 기업에 대한 감독 관청의 감독관계, 그리고 기업과 기업 사이의 경쟁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독점금지정책은 위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모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기업조직면에 있어서는 합병이나 영업양도를 통한 인위적인 몸집 키우기나 지배주식의 취득이나 계약에 의한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경우 이를 원인적으로 규제한다. 그 다음으로 기업활동이나 경쟁 관계의 면에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각종 담합행위,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된다. 마지막으로 시장진입에 대한 인허가를 비롯한 가격이나 상품내용에 대한 규제는 경제민주화의 정신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전반적인 행정규제의 완화가 지향점이 된다.

넓은 의미의 경쟁정책은 공정위나 법원의 경쟁사안에 대한 절차의 착수나 법적 판단은 물론이

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대규모 사업자의 영업전략의 결정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하위법령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기본적 관점을 정리한 후 경쟁정책을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II 기본적 관점 두 가지

### 1. 어떤 시장을 지향할 것인가

독금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의 모형에 관해서는 심각한 논란이 있다. 미국 연방독금법은 독과점사업자의 독점화행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남용적 행태, 그리고 사업자들의 독점화시도행위를 규제하지만 독점시장의 존재 자체를 전면적으로 또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도 소위 독점에 대해 폐해규제적인 접근방법을 취한다. 다시 말해 강력한 독금정책에서도 독과점시장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쟁정책이 암묵적으로 지향하는 시장의 모습이 완전경쟁이냐 유효경쟁이냐 혹은 가쟁시장이냐에 관한 논란이 나오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종래 현실시장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경쟁의 긍정적 작용을 최소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경쟁, 즉 유효경쟁의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여 왔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언제든지 경쟁자가 진입하여 경쟁할 수 있는 가쟁시장(contestable market)을 동 법이 모델로 하는 시장으로 보는 견해가 강력하게 대두한 바 있다.<sup>1)</sup>

1) Jorde/Teece, Antitrust,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16 이하.

특히 Bork나 Posner 등의 원조 혹은 수정 시카고학파의 논설에서는 독금법 운용의 배경을 완전경쟁시장으로 상정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또 완전경쟁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잠정적인 경과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국민경제의 규모가 대단히 작은 데다가 산업화의 연륜이 일천하고, 대다수의 주요 공산품시장이 과점화 되어 있다. 여기에서 수많은 사업자가 난립하여 무한의 경쟁을 벌이는 시장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렵고 또 이러한 시장이 꼭 비람직한 것도 아니다.

비록 법령이나 구체적인 경쟁정책에서 명시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정하는 바는 없으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연혁을 살펴 볼 때 공정거래법과 이에 의거한 경쟁정책들은 유효경쟁론을 염두에 두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련 지역시장의 세계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여하튼 경쟁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있어 기본적 전제가 되는 이 점에 대해 공정위 역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장분석을 행하는 한편 기존의 경쟁정책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2. 어떤 경쟁자 그리고 어떠한 경쟁을 보호할 것인가

실정 독금법 체계 중 구체적인 경쟁의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예는 없다. 경쟁제한행위 또는 거래제한행위를 금지함으로

써 반사적 혹은 간접적으로 경쟁을 촉진할 따름이다. 그러나 경쟁정책은 결국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경쟁정책이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쟁자의 모습이나 경쟁의 유형이 암묵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법률형식상 공급경쟁이나 수요경쟁의 주체는 개별 단위기업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복합적 기업결합이 광범하게 진전된 상황하에서는 법률형식상으로는 개별 단위기업으로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경제적 세력을 가진 기업집단 그 자체가 경쟁의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순수한 개별 단위기업과 기업집단을 배경으로 하는 기업 사이의 경쟁은 사실상 불공정한 게임이 되기 십상이고, 이는 흔히 재벌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언급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독금법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예는 없다. 법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기도 어렵다.<sup>2)</sup>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소위 재벌)에 대한 강력한 경제력집중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점,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된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을 놓고 볼 때, 우리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을 배경으로 한 경쟁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경쟁정책상 의미 있는 경쟁의 유형들로

2) 물론 수평적 혹은 수직적 기업결합, 나아가서 혼합적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시장봉쇄효과나 잠재적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기업결합 그 자체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독금법의 고유영역이다.

3) 홍보의 진입장벽적 성격을 강조하는 학파도 있으나, 이것이 친경쟁적이라는 주장도 있음을 주지하는 바와 같다. Giles H. Burgess, Jr. Ed., *Antitrust and Regulation*, Cambridge: An Elgar Reference Collection, 1992, 164면 이하.

는, 기간분석을 전제로 한 동적 경쟁(dynamic competition)과 일정한 시점에서의 정적 경쟁(static competition), 품질을 배경으로 한 상품의 가격경쟁과 서비스/홍보경쟁, 기술력경쟁 혹은 기술개발경쟁 등이 있다.<sup>3)</sup> 특히 독금법은 가격삭감경쟁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 경쟁의 촉진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또 기술개발로 촉발되는 경쟁의 기여도가 높으며 소비자의 장기적인 후생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주장도 일견 설득력이 있다<sup>4)</sup>. 그러나 동적 경쟁론이나 기술개발경쟁을옹호하는 주장들은 미국에서 연방독금법의 강력한 집행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개된 이론일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은 상품화로 이어지고 이 상품은 가격형성을 통해 경쟁에 임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법이 가격삭감 경쟁에 초점을 두는 것은 법기술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개별 단위기업 사이의 홍보나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상품의 가격과 품질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 각국의 경쟁정책이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하겠다. 그러나 재벌 계열사들이 경제적 활력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 또 R&D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장기적 경쟁력제고가 현안인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III 늘 새삼스러운 재벌문제

공정거래법 22년의 역사에 걸쳐 약 10여회의 중요한 개정이 있었고, 대부분은 재벌정책과 관련된다. 1986년에 재벌규제장치가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후 점점 더 그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sup>5)</sup> 90년대 이후의 재벌정책은 업종 전문화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로 요약할 수 있으나, IMF 환란 이후 선도재벌의 계열사 수나 국민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이 오히려 더 커졌으며 세습경영이나 문어발의 양상도 여전하다.

재벌의 본질은 일종의 혼합적 기업결합체이다. 여기에 소유와 경영의 세습 그리고 황제경영 등의 요소들이 추가된다. 우리나라에서 소수의 재벌로의 사회경제적 세력의 집중, 소위 일반집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정도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6)</sup> 특히 IMF 환란을 거친 후 소수재벌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들은 우수한 인력과 주요 거래기회를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금을 몰아가고 있다. 작년 말의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정서는 다변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이며, 소유 및 지배의 세습이나 소위 황제경영에 대해서는 식자계층 역시 대단히 비판적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재벌규제장치는 이론적 근거가 박약하고 주요국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으며, 또 내국기업의 법적 환경, 특히 경쟁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끔 재정비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한 책무인 것도 사실이다.

4) Jorde/Teece, op. cit., 47면 이하.

5) 2003년 1월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재벌규제장치는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적 규제, 상호출자의 금지, 계열사를 위한 채무보증금지, 출자총액규제, 부당내부거래의 금지 등이 있다.

6) 그러나 자신의 집중 혹은 대기업화가 이루어진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소수의 지도적 기업집단이나 대기업들이 자국의 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다.

여기에서 재벌견제에 관한 정치사회적 요청을 경쟁정책을 포함한 산업정책에서, 그리고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민감한 정책적 과제 이면서, 이와 동시에 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제고를 더불어 고려하여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재벌문제에 관해 가지는 몇 가지 소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벌들이 3대 혹은 4대에 걸쳐 소유와 지배를 대물림하는 현상은 확실히 비정상적이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조세정책, 특히 증여나 상속에 관한 법제를 보완하여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경쟁법이나 회사법 혹은 상법 등 특별법 차원에서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계열사 사이의 고리형 혹은 복합적 자본 참가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복합형 기업결합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핵심적 연결고리로서 작동하는 상황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구획분할이 완화되고 방카슈랑스나 유니버설 뱅킹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재벌의 은행업 진출금지는 그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하게 될 것이고, 게다가 IMF 이후 은행업을 제외한 기타 금융업에서의 소수 재벌 계열사로의 시장집중은 현저하게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금융시장 전반의 구조재편이라는 큰 틀 속에서, 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법인금융(corporate banking)이나 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일관되고 탄력 있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업종 전문화나 핵심역량 강화 등의 정책이

나 부당이전거래의 불식을 통한 개별 단위기업 사이의 경쟁유도는 법제와 여론의 지원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예컨대 규제의 근거가 없으며 구조조정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1999년 초에 삭제되었다가 2000년 1월에 더욱 강력하게 부활한 재벌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규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혼선을 빚었다. 차라리 종래의 규제가 존속했더라면 기업들은 한도를 넘는 출자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외조항의 적용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상당부분 실효를 거둔 계열사를 위한 채무보증의 전면금지도 이제는 탄력성 면에서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금융의 독식과 지나친 차입경영을 막는다는 취지는 좋으나 양질의 금융거래기회는 이를 모두 외국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가뜩이나 부실한 내국은행들의 기업금융(corporate banking)을 위축시키고, 소매금융의 과당경쟁을 통해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거나 않은지 염려스럽다. 또한 유수의 재벌들이 막대한 현금을 모아 이를 움켜쥔 채 재투자를 꺼리거나 해외투자로 빠져나감으로써 국내 고용시장이 얼어붙는 상황과의 관련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위 황제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는 대단히 부정적이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현실이다. 그러나 독특한 소유 및 결합구조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문화가 결부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만만치가 않다.

우선 외국의 경우 혼합적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 차원의 규제가 제거되거나 대폭 완화되어 있다. 또 기업결합은 본질적으로 단일한 지휘체제 도입을 위한 기업조직의 한 모습이며, 투자나

영업부문의 조율 등과 관련하여 단일한 지휘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잭 웰치의 GE가 플라스틱 소재에서 가전제품과 원자력발전기에 이르는 문어발 체제로 황제적 경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찬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황제경영 일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우리나라 특유의 국민적 정서로 생각된다.

수년 전 그룹기조실 폐지가 낳은 산물이 최근 논란되는 구조조정본부인 바, 이를 폐지하더라도 그 기능은 다른 모습으로 존치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룹회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데 문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권한을 적법한 지배구조의 틀 속에서 행사하고 또 권한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황제경영 문제는 소위 '국민정서법' 차원의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선도 재벌들이 자신에게 부과되는 특유의 사회적 책무를 명확하게 또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성실하게 다하려는 자세가 너무나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 VI 독과점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기존의 독점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금지로 표현된다. 지금까지의 공정위의 실무를 보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심결례는 대단히 드물고, 그 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것은 대단히 많다.<sup>7)</sup> 그 결과 이 양자의 조율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7) 2001년의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 시정된 것은 불과 4건이며,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분류되어 처리된 건수는 무려 808 건에 이른다. 공정위, 2002 공정거래백서, 134면/162면 참조.

M&A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안팎의 관련 규정들은 현재 상당히 정제되어 있으며, M&A에 대한 규제는 일국의 경쟁정책의 핵심을 이루며 공정위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이 부분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심결례를 통해 살펴 볼 때, 공정위의 위법성판단이나 시장집중도 분석 기법(HHI 분석) 등이 고도화되고 있다.

카르텔규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처럼 기업결합규제에 비해 카르텔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균형의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본조문인 공정거래법 제19조의 규정은 법기술적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제1항과 제5항의 법문조율, 무리한 추정규정의 수정 등). 제19조제1항의 법문상 카르텔에 대한 당연위법적 위법성판단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현행 법문상으로도 순수한 의미의 당연위법 법리는 곤란한 것으로 생각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신문고시 과동에서 경험하였듯이 가능한 한 일반적인 잣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모두 일률적으로 범죄행위를 구성하며(법 제67조), 매출액 대비 2%의 과징금의 부과원인이 되며(법 제24조의 2), 행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법 제24조).

이와 관련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와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전반적 재검토를 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즉 행태규제의 초점을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 시

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두면서, 독점의 전단계적 상황에서 보이는 사업자의 남용적 행태 또는 맹아적 행위들이나 기타 경쟁제한적 요인을 내포하는 행태에 한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인 사이의 권리투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정위의 정력을 여기에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 또 사법상의 일반 불법행위로서의 위법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차 이를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점과 관련해서는 독일 불공정경쟁방지법(UWG)의 운용사례가 하나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V 맷는말 – 경쟁정책의 절차적 시행

경쟁정책은 효과적인 절차법에 의해 그 실효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절차적 구제의 측면에서 우리 법은 처음부터 강력한 행정규제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연방거래위원회제도가 서면법 제정 후 20여년이 흐른 뒤에 도입된 것과 반대의 현상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사건에 관한 한 공정위는 거의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준입법적, 준사법적 권능을 가진 독립행정위원회로서 광범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또 공정위의 심결절차는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짙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일률적으로 형사법을 구성하면서, 민사적, 행정적 구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을 뿐이고, 공정위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독자적

으로 법원에 이를 제소할 수 없으며 게다가 사법 절차(司法節次)에 의거한 사법적(私法的) 금지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소추권을 가진 검찰도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위반사법을 기소할 수 있다.

이처럼 독과점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문제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이 제한되거나 소극적인 개입에 머무는 것은 경쟁정책이 정파적으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고 또 피해사업자나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공정위 중심의 행정규제주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이 공정위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보완의 방향을 요약하면, 독점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절차와 상관없이 원고로서 바로 법원에 제소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私訴의 활성화), 검찰도 공익대표자로서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안(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해 이를 바로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지만, 검찰과 법원내에서 시장분석능력과 식견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라든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소의 허용, 검찰의 개입 확대 등의 조치가 기본적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위의 정치적 위험성을 경감시키며, 경쟁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일관성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